

## 글로벌 관계사 서비스 이용 계약서

\_\_\_\_\_ (이하 “주계약사”라 합니다)와 \_\_\_\_\_ (이하 “관계사”라 합니다),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은 글로벌 관계사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관계사의 위임 또는 편입에 의해 은행이 주계약사 및 관계사에게 전자금융서비스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용어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제14조(준용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서비스”라 함은 주계약사와 관계사의 위임 또는 편입에 의하여 주계약사가 관계사의 전자금융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통합관리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주계약사”라 함은 관계사가 자신에게 위임한 범위 내에서 관계사를 대신하여 계좌의 조회, 자금의 이체 등을 포함한 제3조의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3. “관계사”라 함은 위임방식에 의해 주계약사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제3조(서비스의 범위)의 전자금융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이용자를 편입한 국내/외 기업을 말합니다.
4. “위임”이라 함은 관계사가 주계약사에게 위임한 범위 내에서 주계약사가 관계사를 대신하여 계좌의 조회, 자금의 이체 등을 포함한 제3조(서비스의 범위)의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5. “편입”이라 함은 관계사를 은행과 주계약사의 계약에 편입하여, 관계사가 자기 주체로 전자금융 거래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3조 (서비스의 범위)

이 계약에 의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관계사가 “글로벌 관계사 서비스 이용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합니다)의 작성을 통해 주계약사에 위임한 업무에 대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한 각종 금융 정보 조회 서비스
2. 관계사가 “신청서”의 작성을 통해 주계약사에 위임한 업무에 대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한 이체 등 지급서비스
3. 주계약사와 관계사간의 위임에 의하여 신청한 기타 위임사항
4. 관계사가 은행에 등록한 전자금융서비스

### 제4조 (서비스의 지정)

- ① 주계약사와 관계사는 양자가 작성한 “신청서”에 위임대상 업무를 지정합니다.
- ② 위임대상 업무는 예금, 외환, 대출, 수출입, 신용카드, 전자결제, 지로공과금 등에 대한 조회 및 지급거래를 말합니다
- ③ 주계약사와 관계사는 양자가 작성한 “신청서”에 이용자 편입으로 관계사의 이용자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서비스는 관계사가 은행에 등록한 이용서비스로 한정합니다.

### 제5조 (서비스의 이용 신청, 일시중지, 변경, 해지)

- ① 주계약사와 관계사는 각각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신청합니다.
- ② 은행은 주계약사가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신의 판단에 의해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③ 주계약사와 관계사는 상호 사전 통보함이 없이 은행에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 또는 일시적인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주계약사, 관계사 및 은행은 상호 협의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⑤ 주계약사 또는 관계사가 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으로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제6조 (서비스의 이용 절차)

- ① 주계약사는 은행이 정한 이용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② 주계약사는 관계사가 위임한 범위(업무 및 계좌 등)내에서 은행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③ 관계사가 주계약사에게 계좌에 대한 출금 권한 및 업무에 대한 납부 거래를 위임한 경우, 전자금융서비스의 이체한도 및 이체에 필요한 접근매체 등은 주계약사가 가진 이체한도와 접근매체에 따릅니다.
- ④ 은행은 주계약사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책임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공지에 의해 자신의 판단으로 서비스 이용절차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 ⑤ 이용절차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은행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절차 및 기준에 따릅니다.

#### 제7조 (서비스 이용시간)

이 서비스는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한 해당 서비스의 전자금융거래 이용 시간에 따릅니다.

#### 제8조 (서비스 이용 대가의 지급)

이 서비스의 이용 수수료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게시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제9조 (책임과 의무)

-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② 주계약사와 관계사는 은행에 제출한 서류의 진정성을 보장하고, 은행은 통상의 주의로 그 진정성을 확인한 후 이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③ 관계사는 주계약사가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한 업무를 제6조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 자신이 직접처리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고, 은행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④ 관계사와 주계약사 간에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별도의 이용 범위(이체한도, 최소잔액 유지 등)를 정하였다 하더라도, 은행은 이를 감안하지 않고 관계사가 주계약사에게 업무의 조회 또는 출금, 납부 권한 전체를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주계약사는 자사의 직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1. 주계약사는 거래에 대하여 다단계 결재에 의한 승인체계를 설정하고, 중요한 거래로 판단하는 경우 복수의 승인체계를 도입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2. 주계약사가 제1호의 다단계 결재 승인체계 등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주계약사의 자체적인 내부 통제 절차에 따라 거래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3. 주계약사는 그 판단에 따라 적절한 규모의 거래별 또는 일중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등 내부 통제 체계를 확립하여 운용하여야 합니다.
  - 4. 퇴사 또는 담당 직무의 변경 등 이용자의 신상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계약사는 당해 이용자의 권한을 지체 없이 회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⑥ 은행은 관계사가 “신청서”에 신청한 통지방법, 통지주기에 따라 금융거래 정보를 통지 하여야 합니다.

#### 제10조 (면책)

- ① 은행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주계약사 또는 관계사에게 발생하는 직간접 또는 잠재적인 손실을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홍수, 악천후 등 천재지변으로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2. 화재, 전쟁, 테러, 폭발, 사회소요사태, 산업분규 등으로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3. 법령, 규제조치로 인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통신기기, 통신회선 장애 등으로 장기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주계약사 및 관계사에게 발생한 직간접 또는 잠재적인 손실을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주계약사가 관계사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2. 편입한 관계사 이용자의 이용권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3. 주계약사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 계약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주계약사가 서비스 이용자의 직무 또는 신상 변동에 따른 이용권한 관리를 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권한 내에서 부정 사용한 경우
5. **주계약사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단, 이용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은행이 책임을 집니다.**
6. 관계사가 위임한 계좌의 해지, 지급제한, 사고신고 등 비정상적인 상태로 인해 서비스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7. 은행이 통상적인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고의나 과실이 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

#### 제11조 (계약의 효력 발생)

이 계약은 당사자 전부가 서명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속 유효합니다.

#### 제12조 (비밀유지 및 정보제공)

이 계약의 당사자는 서비스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이 계약에 의한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제13조 (분쟁 해결절차, 준거법 및 합의관할)

-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계약 내용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근거로 계약 당사자의 협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14조 (준용 규정)

- ① 이 계약에서 정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각각의 예금계좌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은행의 예금거래기본약관과 당해 예금의 거래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은행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기업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및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 업무규약을 준용합니다.

#### 제15조 (특약사항)

주계약사와 관계사, 은행은 아래의 사항을 특약으로 정합니다.

(특약사항 없음)

주계약사와 관계사, 은행은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3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합니다.

<p>주계약사</p>	<p>회사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일 자 :</p>
<p>관 계 사</p>	<p>회사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일 자 :   <b>※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b>          본인은 “글로벌 관계사 서비스 이용약관서”에 따라 위 주계약사 앞 위임할 내용에서 지정한 본인의 금융정보를 주계약사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고, 은행이 정한 바에 따라 서비스 내용 통지 수령에 동의합니다.   <p style="text-align: right;">관계사 (인)</p> </p>
<p>은 행</p>	<p>(주)하나은행 (부)지점 주 소 : 지점장 : (인) 일 자 :</p>